수 입 인 지

본인확인 및 인감대조	담당	책임자	관리자	부점장

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과 이 약정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# 대출거래약정서

(주택도시기금대출: 가계용)

주식회사	क्रा	나은행	앞
------	------	-----	---

20	년	월	일

1.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판(가계용)이 적용(변경 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) 됨을 슝인하고,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					1	금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 년 2.0%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	리가 연 2.0% 이하인		
		. ,	'을 왁약압니나. '약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편	<sup>과(</sup> 가계용) 및 이 약정	서		구분	□ 구입자금	□ 전세자금
			다 그 = 0 다는 다음 다음 片,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하		ŀ		기준금리 적용기준	대출기간( )년 이며, 부부합산 연소득 ( )원 임	임차보중금 ( )원 이며, 부부합산 연소득 ( )원 임
	주 소:	직 위	성명			대출이자 <del>율</del>		□ 다자녀가구 0.5%p □ 생애최초구입, 다문화 ·	□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(이하로서 다음중 하나이
	본인확인 ■ 기타 특약사업		6 6			네돌에시설	우대금리 (택1)	장애인가구 0.2%p □ 생애최초구입 &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0.4%p	해당하는 자 1.0%p - 기초생활수급자 - 차상위계충 - 한부모가정
		ı						□ 부도임대주택 분양(경락) 자금 10년간 0.5%p (10년이후 다른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 1가지 적용가능)	□ 다자녀가구 0.5%p □ 노인부양, 다문화, 장애인 고령자가구 0.2%p
	본인			(서명 또는 인	1)				
		계좌 지정ㆍ위임	표시				추가 우대금리	□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( )%p	□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.2%p
	금 역	액 금 은 행 명  좌 계좌번호 예 금 주	:	원			이자( · 연체기	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  을 + 연 4%   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  일 + 연 5%	
	위임자(채무?	자)		(서명 또는 (	0 )	지연배상금률		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<sup>0</sup> 너 이자 <del>요</del> + 연 4%	기하인 경우 대출금 잔액에
	지급일자						· 기한	고 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3	Ĕ과인 경우 대출금 잔액에
	지급금액	금		원			※ 다만,	너 이자율 + 연 5% 지연배상금률이 연 10%를 최 압니다.	·과하는 경우에는 연 10%를
		다음과 같습니다	t.(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야 내에 "V" 표시 합니다.)	서 있는 경우 <del>은</del> 행직원	원의	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	디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(윤년 로 계산합니다. 다만, 분할상환 다.	
	대출과목					이자율변경시	이자율 변		
	대출금액	금		원정		적용기준	변경기준	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	J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.
	대출개시일	년	실 일 대출기간만료일	년 월	일		□ 대출기	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.	
			연 %로 교통부의 고시 기준금리가 ※ 은행은 금리 인상시 고객 경우에 한하여 서면, SI 방법으로 선택하여 통지	백님께서 사전에 동의한 MS, 이메일 등 한가지	t. <u>t</u>	대출실행 방 법	액을 <sup>확</sup> 취득후 □ 대출가	I류나 기성고율 등에 의하여 막인하고 분할 실행 하되, 대를 I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. I시일로부터 ( )년 ( 분할 실행합니다.	
		W =	၂ - 0 급스노 건택이어 6^	T에드립니니.			1 714 5	_ = = 0=11.	



원리금의

상환방법

□ 분할상환

원금은 대출개시일로 부터 ( □ (

음날부터 위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매월(

균등 □ 원금균등) 으로 분할상환 합니다.

년 월



일까지) 거치하고, 이 기간 중의 이자

)일에 후지급하며, 할부금은 거치기간 만료일 다

)개월 동안,

)일에 ( □ 원리금

변동금리

고정금리

대출이자율

(※ 우대금리가 반영된 최종금리입니다.)

(http://nhuf.molit.go.kr)]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(※ 우대금리가 반영된 최종금리입니다.)

※ 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한

이자율로 운용계획 변경 시

[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]

□ 일시상환 원금은 위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하며, 이자는 매월( )일에 후지급하되, 최종이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. □ 혼합상환(원리금 · 원금균등분할 + 일시상환) 원(대출금액의 %상당금액)은 원리금의 대출기간만료일에 전액상환 하되 이자는 매월( )일에 상환방법 후지급하고 최종 이자는 만료일에 지급합니다. 위 금액 이외에 대하여는 대출실행일 익월 최초로 도래하는 대출개시일 해당일 (매월 일)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(□ 원리금 균등 □ 원금 균등) 분할상환 합니다. \*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용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으 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할부금의 □ 원단위로 합니다. 상환방법

## 제2조 인지세의 부담

-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(제4조)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

#### 제3조 대출이자율, 지연배상금률의 변동 및 지연배상금

- ① 대출이자율, 지연배상금률, 대출기간, 호당대출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릅니다.
- ②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제1조에서 정한 이자율 또는 지연배상금 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에 따르기로 합니다.
- ③ 이자 · 분할상환금 · 분할상환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④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 또는 이 약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, 즉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## 제4조 대출금의 분할실행

- ①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후에 확정되며, 확정방법은 대출실행내역표등의 중빙자료에 의합니다.
- ②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은 최초 분할실행일부터 대출기간 만료일 까지로 합니다. 이 경우 최초 분할실행일을 기준으로 거치기간, 대출기간 만료일 및 약정납입일을 정하기로 합니다.
- ③ 제1조의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분할실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행된 금액으로 대출금액을 확정하기로 합니다.
- ④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금융사정의 변동, 채권보전상 필요 있는 때에는, 은 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,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대출실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5조 추가담보

- ① 본인이 은행의 대출을 받아 건설 또는 구입하는 시설물과 건물(대출받은 토지위에 건설하는 시설물, 건물 포함)은 건설도중이나 건설 완료후에도 은행의 숙인없이 그 소유권 이전행위, 저당권, 지상권, 전세권, 가등기, 임차권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, 제3자로부터 은행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기로 하며, 동 시설물과 건물은 토지와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,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,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설정하기로 합니다.
- ② 제1항의 시설물과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과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니다.
- ③ 본인이 담보로 제공할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기로 합니다.
- ④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감소(후취담보 취득 시 포함)한 경 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판(가계용) 제6조(담보의 제공)에 따르기로 합니다.

## 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듕

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 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.

- 1. 주택건설사업계획슝인 또는 건축허가가 취소된 때
- 2. 주택법령, 건축법령 등을 위반한 때 또는 시정조치 등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
- 3. 본인의 귀책사유로 슝인 또는 허가받은 사업계획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
- 4. 해당 주택을 주거용도가 아닌 숙박용 · 별장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또 는 태양열 주택인 경우 기 설치한 난방 설비를 철거한 때
- 5. 국민주택건설자금, 중도금대출 등을 받은 후 선순위 채권 등으로 담보가 부족한 경우 그 초과 대출금 해당액
- 6. 전(월)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때
  - 가. 임차주택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퇴거한 경우
  - 나. 임차 전용면적이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)를 초과한 경우
  - 다. 법인, 조합, 문중, 교회, 사찰,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(단,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 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가능)
-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곧 제출하기로 합니다.

#### 제7조 무주택등에 대한 특약사항

- ① 「주택법」및 「주택도시기금 온용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, 결혼예정배우자 포함)의 무주택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.
- ② 본인 및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, 결혼예정배우자 포함)이 「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 따라 [ 생애최초 ] 신청일로부터 5년이상 ] 신청일 현재]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.
- ③ 제2항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, 오피스텔구 입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

무주택 듕 관련 특약사항을 확인 하였으며,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					
본	인	(서명 또는 인)			

## 제8조 소유권이전 · 임차계약 해지시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

- ①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시설물과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- ②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
## 제9조 기한연장

- ① 오피스텔구입자금, 전세자금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%를 상환합니다. 다만, 10% 상환이 불가한 경우 0.1%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.
- ② 신규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충·한부 모가정으로 금리우대를 받은 경우 기한연장 시 마다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계충·한부모가정 중 1가지 사항을 확인하고,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을 중단하기로 합니다.
- ③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채무의 상환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 자율의 변경시에도 계속하여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.

## 제10조 대출금 수령위임

은행으로부터 이 약정서에 의해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금 중 위 대출금 수령계 좌의 금액(부대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)의 청구·수령할 일 체의 권한을 위와 같이 위임하며 이에 따르는 법적분쟁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

## ■ 기타 특약사항

본	인	(서명 또는 인)



